

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(김영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5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04. .

발 의 자 : 김영철·전준호 의원(2인)

□ 개정이유

- 안산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대상범위를 안산시민이 아닌 내·외국인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」를 「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.
- 나. 명예시민증 수여 범위를 안산시민이 아닌 내·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수여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 함.(안 제2조)
- 다. 수여대상자는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,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 함.(안 제3조)
- 라. 추상적인 권리의무를 삭제하고 명예시민의 실질적 혜택부여를 위한 예우규정 신설 함.(안 제4조)
- 마. 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함.(안 제5조).
- 바. 명예시민증 수여관련 서식 재정비(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 까지)

개정조례안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제1항, 제14조
-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-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(현행조례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

- 입법예고 : 2012. 4. .() ~ 4. .()

기타 참고사항

- 신 · 구조문 대비표

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여대상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안산시민이 아닌 내·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산시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”이라 한다)을 수여할 수 있다.

1. 국내외적으로 안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
2. 사회·경제·문화·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
3.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
4.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

제3조(수여 및 관리)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고자 할 때에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방문 외빈 등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산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, 명예시민증을 받은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인사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서(별제 제1호 서식)와 명예시민증(별지 제2호서식)을 수여 한다.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④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명예시민증수여대장(별지 제3호서식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우)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·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

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여취소)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서식>

○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

제 호

명 예 시 민 증 서

(성 명)

귀하께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,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.

년 월 일

안 산 시 장

직 인

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

(Name)

To applaud your devotion to Ansan Ci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,

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.

Month Day Year

Signature

Mayor of Ansan City

○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

제 호
명 예 시 민 증 서
(주 소) (직위 또는 직업, 성명)
귀하께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,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서를 드립니다.
년 월 일
안 산 시 장 직 인

〈별지 제2호서식〉

명예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

1. 모 형

사 진 (3x4cm)	제 호
	명 예 시 민 증
	(주 소) (직위 또는 직업, 성명)
	안산시 명예시민증수여 및 관리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를 안산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.
	년 월 일
	안 산 시 장 직 인

2. 규 격 : 가로 8.5센티미터, 세로 5.5센티미터

3. 색 깔 : 황색바탕, 흑색글씨

〈별지 제3호서식〉

명 예 시 민 증 수 여 대 장

연번	국 적	주소또는 소 속	직업또는 직 위	성 명	생년월일	공적개요	수 여			취 소		비고
							일자	장소	기념품	일자	사유	

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25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2. 4. 20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.

□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안산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·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사항으로,
- 동 조례안 제2조제4호의 수여대상 자격조건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자격조건이 미래지향적이고 추상적이라 판단되므로 자격조건을 제한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자로 수여대상 자격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(안 제2조제4호)

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**

제2조제4호 중 “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”를 “기여한 자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수여대상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안산시민이 아닌 내·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산시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”이라 한다)을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</p>	<p>제4조(수여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원안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에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자</p>